

의안번호	제3078호
의결	2026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3. 13.

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7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3. 13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엄홍길전시관의 명칭과 위치(안 제3조)
- 다. 엄홍길전시관의 기능(안 제4조)
- 라. 엄홍길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주체(안 제5조)
- 마. 엄홍길 전시관의 개관, 휴관, 관람시간 등(안 제6조~제9조)
- 바.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6761(2026. 2. 6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290호

가) 예고기간: 2026. 2. 10.~2026. 3. 3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엄홍길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시물”이란 엄홍길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시하는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.
2. “관람료”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시설의 명칭은 엄홍길전시관(이하 “전시관”이라 한다)이라 하며,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35에 둔다.

②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엄홍길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
2. 전시관 및 부속시설의 보존 및 유지관리
3. 그 밖에 전시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관리 및 운영) 전시관은 군수가 관리·운영한다.

제6조(개관 및 휴관)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

1. 1월 1일, 매주 월요일
2.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

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고성군 누리집(인터넷 홈페이지)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제7조(관람시간)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:30부터 17:30까지로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관람료)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
제9조(관람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위험물 또는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2.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3.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10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전시관 내외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동판매기
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

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시물 보호, 관람 동선, 안전 및 위생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전시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 엄홍길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녹지공원과장 김 주 화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